

수원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나10355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나10355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소124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2. 9. 28.

판결 선고 2022. 11.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소1240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32,48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된 15,153,82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다가, 당시에 이르러 퇴직급여 공제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된 18,532,4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원고의 2021. 12. 27.자 및 2022. 7.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53,824원을 지급하라.1)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2)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4. 2.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의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를 회생채무자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개회25582호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를 통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고에게 15,153,824원을 변제하고, 2014. 3. 1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4. 3. 27.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6.경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총 18,532,480원[= 원고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고 남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원금) 13,775,496원 +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기간 중 발생한 이자 4,756,984원]을 공제하였고(이하 위 공제금을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에서 적용된 연체금과 이자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높은 이율로 적용한 것으로써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및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제금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가 완료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변제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공제금 18,532,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3) 피고가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돈 및 이 사건 공제금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한 것은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4.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이 18,165,280원이 남아 있었는데, 위 대출금 원금과 200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위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던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은 총 60개월에 걸쳐 15,153,824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고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4. 3. 27.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이행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공제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제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1조, 제446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이자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결국 해당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연체이자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당시 적용되던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5호에 의하면, 피고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현재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에 포함되더라도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환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를 원고의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적용되던 2003년 피고의 공무원 연금대부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대부 이자율은 원금에 대하여 연 7.5%(변동금리), 연체 이자율은 미납 원금 및 미납 이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의 2배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가장 낮은 은행대출 연체금리와 비교하여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이전에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내역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에게 적용된 이자율이 위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2. 8. 29.자 준비서면 참조). 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는 위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기준에 따른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일반적으로 대출거래에 있어 일정한 이자나 연체 이자는 적용되는 점, 위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기준에 따른 연금대부 신청서의 형식 및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나 연체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기준에 따른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이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거나 채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이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㉔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원고가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무는 합계 26,435,699원(= 원금 18,165,280원 + 이자 4,456,325원 + 연체 이자 3,814,094원)이었다. ㉕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12,660,203원을 지급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에게 총 15,153,824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총 변제 예정금액이었던 점(갑 제1호증),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총 60회의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기 이전에 퇴직을 하여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 전부를 공제한 다음 2013. 7. 4. 법원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신고를 하였던 점(을 제3, 4, 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위 15,153,824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㉔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미납 원금을 13,775,496원(= 위 26,435,699원 - 위 12,660,203원, 연체 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순차 충당)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기간 중의 이자를 총 4,756,98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의 퇴직급여에서 위 미납 원금과 이자를 합한 18,532,480원(= 위 13,775,496원 + 위 4,756,984원)을 공제하였는데, 위 미납 이자의 산정에는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금리(분기별 변동)'가 적용되었다[이는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달 초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위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자율 자체도 위 2003년 당시 공무원 연금대부 기준에 따른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채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㉕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변제 총당이나 이자 및 연체 이자의 산정이 약정과 다르다거나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불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김문성

판사정승화

- 1) 이는 당심에서 변경되기 전의 청구에 대한 항소취지인데, 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와 같은 원래의 항소취지는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고의 2021. 12. 27.자 및 2022. 7.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그 동안의 변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
-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2021. 7. 30.자 답변서 참조)은 구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기 전의 원고의 청구인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된 15,153,824원의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변경된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주장으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